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2월 11일, 김소희의원 등 16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8.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2025.9.18.)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6차 전체회의(2025.9.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
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소희의원)

정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적정 탄소가격을 형성하는 활성화·안정화된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예측가능성과 형평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24.12). 이에, 동 기본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배출권 할당 기준을 ‘업체’에서 ‘사업장’ 단위로 변경하고, 유·무상 할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지표 중 하나인 ‘비용발생도’를 ‘탄소집약도’로 바꾸며, 배출권시장의 수급균형을 위해 유상할당 경매량 조정을 통한 규칙 기반의 시장안정화 제도 도입 등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한편, 하위법령(「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배출권의 추가할당, 할당취소의 일부사유를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인정했던 조기감축실적과 관련된 구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법령을 현행 제도에 맞게 현행화하는 등 입법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8호·제12조제2항제2호·제15조·제37조제2호 삭제, 제12조제5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3조제1항 및 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개정안은 배출권 할당의 업종 구분단위를 현행 업체에서 사업장(할당 대상)으로 변경하고, 배출권 유·무상할당 판단지표를 배출권 가격변동과 무관한 지표로 변경하며, 제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인정된 조기감축실적에 대한 할당규정을 삭제하고,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및 유상할당 배출권의 조정근거 마련, 할당취소 및 추가할당 사유의 상향 입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적절한 수준의 탄소가격을 형성하고, 예측가능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며 현행 제도에 부합하게 법률을 정비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업종구분단위를 할당대상업체에서 사업장(할당대상)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동법 여타 조문에서 대부분 업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배출권 거래량 정보만으로 공급 부족 및 과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요·공급의 상황을 조정기준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사항

없음